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4년 3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4년 3월 22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3.12.14.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 ~ 2026년 충청북도 의회 의정활동비’에 맞춰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변경하고,

○ 의회 소재지 내 출장여비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액 변경(안 제2조)

-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 월 1,200,000원 → **월 1,500,000원**
- 보조활동비 : 월 300,000원 → **월 500,000원**

○ 의회 소재지 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 명시(안 제5조제1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조례안예고 : “제출의견 없음”

- ’24. 3. 14.(목) ~ 3. 19.(화) /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월 1,200,000원으로”를 “월 1,500,000원으로”로 하고, “월 300,000원으로”를 “월 500,000원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일비와 식비만을”을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그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하며, 매월 충청북도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 ---------- ---------- 월 1,500,000원으로 ----------월500,000원으로 ---------- ----------
제5조(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장 등 여비지급) ①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재지 내에서 의원의 출장여비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제5조(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장 등 여비지급) ① ---------- ----------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군·자치구의회의원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의정활동비 금액 변경 : 월 1,500,000원 → **월 2,000,000원**

-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 월 1,200,000원 → **월 1,500,000원**
- 보조활동비 : 월 300,000원 → **월 500,000원**

2. 비용 발생 요인

○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변경 : 월 2,000,000원

3. 관련조문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나. 추계 결과

- 의정활동비 : 840,000천원(2,000,000원 × 35명 × 12개월)

다. 재원조달방안

- 도의회 자체재원 사용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840,000	840,000	840,000	840,000	840,000	4,200,000
의정활동비	840,000	840,000	840,000	840,000	840,000	4,200,000